

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3. 12. 26.>

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(제21조 관련)

명칭	관할구역
부산지방해양수산청	부산광역시, 경상남도(김해시·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), 제주특별자치도
인천지방해양수산청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중 김포시·부천시·고양시·의정부시·남양주시·파주시·구리시·동두천시·포천시·양주시·가평군·연천군·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분동
여수지방해양수산청	전라남도 중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고흥군·보성군·구례군·곡성군 및 장흥군
마산지방해양수산청	경상남도(김해시·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한다)
울산지방해양수산청	울산광역시
동해지방해양수산청	강원특별자치도
군산지방해양수산청	전북특별자치도, 충청남도(장항항에 한정한다)
목포지방해양수산청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고흥군·보성군·구례군·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한다)
포항지방해양수산청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
평택지방해양수산청	경기도(김포시·부천시·고양시·의정부시·남양주시·파주시·구리시·동두천시·포천시·양주시·가평군·연천군·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분동은 제외한다), 충청남도(평택항·당진항에 한정한다)
대산지방해양수산청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

(장항항 · 평택항 및 당진항은 제외한다)
